

퇴직연금 거래 신청서 (DB,DC,기업형IRP)

담당	책임자

20 년 월 일

전 산 인 자 란

■ 신청정보

기업명	필수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필수 기재	기업구분	<input type="checkbox"/> 법인 <input type="checkbox"/> 개인사업자
도입제도	<input type="checkbox"/> DB <input type="checkbox"/> DC <input type="checkbox"/> 기업형IRP <input type="checkbox"/> 혼합형(<input type="checkbox"/> DB / <input type="checkbox"/> DC)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회계결산일	월

■ 계약정보

근로자대표	<input type="checkbox"/> 노동조합 <input type="checkbox"/> 근로자과반수
제도시행일	_____년 월 일 *제도도입하는 월의 1일
제도가입대상	<input type="checkbox"/> 입사 즉시 가입 <input type="checkbox"/> 입사후 1년 경과 가입
	<input type="checkbox"/> 임원포함 <input type="checkbox"/> 임원제외
퇴직연금 가입기간	<input type="checkbox"/> 제도가입 이후 근무분만 <input type="checkbox"/> 제도가입 이전 근무분 포함 <input type="checkbox"/> 제도가입 이전 특정시점이후 근무분 포함 (특정시점 :)
부담금납입주기	<input type="checkbox"/> 월납 <input type="checkbox"/> 분기납 <input type="checkbox"/> 반기납 <input type="checkbox"/> 연납
혼합형 제도	설정비율 DB(), DC() *설정비율 합이 100도도록 작성합니다.
	DB 운용관리 계약형태 <input type="checkbox"/> 단독계약 <input type="checkbox"/> 복수계약
	간사기관 *계약형태가 복수계약인 경우만 작성합니다.
복수자산관리기관	*당행의 자산관리기관이 존재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 기업정보

기업반환 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신청기업명만 가능합니다.		
신탁관리인 (DB,DC)	성명			
	생년월일			
퇴직연금정보 수신 담당자 <small>*개인정보수집을 위해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동의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small>				
주 담당자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이메일주소	
부 담당자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이메일주소	
퇴직연금거래인감				
퇴직연금 운용관리와 자산관리 계약 체결 및 운용관리와 자산관리 업무에 처리할 거래인감을 신고합니다.				거래인감

■ 시산정보(DB)

정년규정	<input type="checkbox"/> 있음 [세] <input type="checkbox"/> 없음(60세)	지급율	<input type="checkbox"/> 법정제 <input type="checkbox"/> 누진제(퇴직급여규정 제출)	
가입자수	<input type="checkbox"/> 300명 미만 (명)	퇴직자 명부 미제출 사유서 가입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은 경영통계를 활용한 경영퇴직률, 경영임금상승률을 사용하여 부담금을 산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명부작성일로 부터 직전 3개년의 퇴직자 명부를 귀행에 제출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은 당사의 사정으로 퇴직자 명부를 제출하지 못함을 확인합니다. <input type="checkbox"/> 타금융기관 간사기관(당행 비간사기관) <input type="checkbox"/> 창립후 3년 미경과(단, 합병, 분사 제외) <input type="checkbox"/> 과거 자료를 분실(화재발생 등) <input type="checkbox"/> 대량퇴직 발생(구조조정 등)		
	<input type="checkbox"/> 300명 이상 (명) * 명부작성일로 부터 직전 3년의 퇴직자 명부를 필수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이 불가능 한 경우 미제출사유를 작성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부담금은 예측단위적립방식(PUC)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 제도가입 이전 근무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설정한 경우 과거 근무채우는 종업원들의 평균근무연수에 따라 일정 기간동안 분할 납부 혹은 일시납부합니다. 단, DC제도인 경우 제도도입 즉시 일시납부합니다.
- 법정제: 계속근무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
누진제: 계속근무연수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 이상의 지급율을 곱하여 퇴직금으로 지급
- 기산일: 퇴직금 산출 시작일로 중간정산 시행시 중간정산 익일, 미시행시 입사일입니다.



■ 가입자정보 및 부담금입금 정보

가입자수	명	기업부담금 합계	원
등록정보	<input type="checkbox"/> 일괄등록(가입자명부 파일 및 부담금명부 파일 작성) *별도첨부 <input type="checkbox"/> 개별등록(아래표 작성)		
기본정보	DB가입자	DC,기업형IRP 가입자	
		임금총액 정보	기업부담금액
<input type="checkbox"/> 성명 :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번호 : <input type="checkbox"/> 입사일 : <input type="checkbox"/> 중간정산일 : <input type="checkbox"/> 사원번호 :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	기준급여: _____ 원 <input type="checkbox"/> 임직원: <input type="checkbox"/> 직원 <input type="checkbox"/> 임원 <input type="checkbox"/> 촉탁 <input type="checkbox"/> 현재추계액: _____ 원 <input type="checkbox"/> 예상추계액: _____ 원 (임원, 촉탁인 경우 작성 필수)	당해년도 포함 최근 4년간 임금총액정보 1) 20__년 _____ 원 2) 20__년 _____ 원 3) 20__년 _____ 원 4) 20__년 _____ 원	원
<input type="checkbox"/> 성명 :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번호 : <input type="checkbox"/> 입사일 : <input type="checkbox"/> 중간정산일 : <input type="checkbox"/> 사원번호 :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	기준급여: _____ 원 <input type="checkbox"/> 임직원: <input type="checkbox"/> 직원 <input type="checkbox"/> 임원 <input type="checkbox"/> 촉탁 <input type="checkbox"/> 현재추계액: _____ 원 <input type="checkbox"/> 예상추계액: _____ 원 (임원, 촉탁인 경우 작성 필수)	당해년도 포함 최근 4년간 임금총액정보 1) 20__년 _____ 원 2) 20__년 _____ 원 3) 20__년 _____ 원 4) 20__년 _____ 원	원
<input type="checkbox"/> 성명 :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번호 : <input type="checkbox"/> 입사일 : <input type="checkbox"/> 중간정산일 : <input type="checkbox"/> 사원번호 :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	기준급여: _____ 원 <input type="checkbox"/> 임직원: <input type="checkbox"/> 직원 <input type="checkbox"/> 임원 <input type="checkbox"/> 촉탁 <input type="checkbox"/> 현재추계액: _____ 원 <input type="checkbox"/> 예상추계액: _____ 원 (임원, 촉탁인 경우 작성 필수)	당해년도 포함 최근 4년간 임금총액정보 1) 20__년 _____ 원 2) 20__년 _____ 원 3) 20__년 _____ 원 4) 20__년 _____ 원	원
<input type="checkbox"/> 성명 :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번호 : <input type="checkbox"/> 입사일 : <input type="checkbox"/> 중간정산일 : <input type="checkbox"/> 사원번호 :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	기준급여: _____ 원 <input type="checkbox"/> 임직원: <input type="checkbox"/> 직원 <input type="checkbox"/> 임원 <input type="checkbox"/> 촉탁 <input type="checkbox"/> 현재추계액: _____ 원 <input type="checkbox"/> 예상추계액: _____ 원 (임원, 촉탁인 경우 작성 필수)	당해년도 포함 최근 4년간 임금총액정보 1) 20__년 _____ 원 2) 20__년 _____ 원 3) 20__년 _____ 원 4) 20__년 _____ 원	원
<input type="checkbox"/> 성명 :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번호 : <input type="checkbox"/> 입사일 : <input type="checkbox"/> 중간정산일 : <input type="checkbox"/> 사원번호 :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	기준급여: _____ 원 <input type="checkbox"/> 임직원: <input type="checkbox"/> 직원 <input type="checkbox"/> 임원 <input type="checkbox"/> 촉탁 <input type="checkbox"/> 현재추계액: _____ 원 <input type="checkbox"/> 예상추계액: _____ 원 (임원, 촉탁인 경우 작성 필수)	당해년도 포함 최근 4년간 임금총액정보 1) 20__년 _____ 원 2) 20__년 _____ 원 3) 20__년 _____ 원 4) 20__년 _____ 원	원

■ DC, 기업형IRP 서비스 신청

DC 기업부담금, 퇴직연금수수료 자동이체			
<input type="checkbox"/> 신청	DC 기업부담금 *자동이체 부담금명부 별도제출	은행을 방문하는 불편없이 기업부담금을 매월 지정하신 계좌에서 자동출금하여 가입자계정에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체일 _____ 일 이체개시일 _____ 이체종료일 _____ 출금계좌번호 *KEB하나은행 기업명의 본인계좌만 가능	
<input type="checkbox"/> 신청	퇴직연금 수수료	은행을 방문하는 불편없이 계약응당일에 지정하신 계좌에서 퇴직연금수수료를 자동출금하여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출금계좌번호 *KEB하나은행 기업명의 본인계좌만 가능	
기업부담금, 퇴직연금수수료 연동 납부			
손님이 요청하신 날짜에 퇴직연금 기업부담금 또는 퇴직연금 수수료를 지정된 출금계좌에서 별도의 지급청구서 작성없이 (무통장·무인감) 출금 처리하여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업부담금 입금요청시 마다 '부담금입금등록신청서'를 별도로 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신청	기업부담금	출금계좌번호	*KEB하나은행 기업명의 본인계좌만 가능
<input type="checkbox"/> 신청	퇴직연금 수수료	출금계좌번호	*KEB하나은행 기업명의 본인계좌만 가능

※ 유의사항

- 본 신청과 별도로 기업부담금 입금 요청 시마다 「부담금 입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인터넷뱅킹으로 입금 시 제외)
- 출금계좌에서 인출하여 기업부담금은 가입(근로)자 계정에 입금 처리하고, 퇴직연금 수수료는 은행에 납부합니다.
- 출금계좌의 지급 가능 잔액이 없는 경우 처리가 불가능하오니 연동 납부 요청 시 출금 가능 잔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금계좌에 한도대출이 신청되어 있는 경우 해당 대출한도는 출금 가능 잔액으로 간주합니다.
- 기업형IRP는 신청시점 정상 가입자 전체에 대하여 등록(신청, 변경, 취소) 됩니다. 가입자가 추가되면 별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통지서비스 신청

법적통지	법적통지는 법에서 정한 필수 통지 사항입니다. 신규 또는 변경시 신청하신 내용으로 등록(변경)되며, 하나은행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퇴직연금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항목	발송주기	발송기준	발송방법	안내사항
재정검증결과 안내(DB)	수시	사업연도 종료후 6개월이내	우편	기업의 우편물 수령처 또는 본사로 발송됩니다.
가입자교육(DB)	매년	제도도입 후 1년 이내	이메일 우편	
운용현황통지(DB)	<input type="checkbox"/> 월 <input type="checkbox"/> 분기 <input type="checkbox"/> 반기 *미선택시 분기통지됩니다	발송주기 다음월 통지		기업담당자의 이메일로 우선발송되며, 이메일이 없는 경우 기업의 우편물 수령처 또는 본사로 발송됩니다.
기업부담금 미납통지 (DC,기업형IRP)	수시	미납발생일의 익일 1일 (휴일인 경우 전영업일)		
위험자산 비중이 총적립금 70%를 초과하는 경우	수시	발생일 다음영업일 통지	이메일 SMS	기업담당자의 이메일로 우선 발송되며, 이메일이 없는 경우 문자(SMS)로 발송됩니다.
퇴직연금 감득규정에 의한 상품매매 불능 안내(DB)	수시	발생일 다음영업일 통지	이메일 SMS	
원리금보장상품 만기안내(DB)	수시	만기도래 15일전 통지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SMS <input type="checkbox"/> 수신거부	발송방법중 하나를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통지 (DB)	서비스통지는 선택 사항입니다. 신규 또는 변경시 신청하신 내용으로 등록(변경) 됩니다.		
펀드 운용수익률 통지	<input type="checkbox"/> 신규/변경 <input type="checkbox"/> 해제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SMS ※ 매월말 기준 누적수익률*로 계산하여 다음 월 통지	

※ 누적수익률 : (평가액 - 투자원금) ÷ 투자원금 × 100 (투자원금은 매도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기타통지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정해진 발송방법과 발송기준으로 발송주기에 발송됩니다.		
항목	발송주기	발송기준	발송방법
매수예정상품등록(변경) 안내 (DB)	수시	거래일 익영업일 통지	[발송제외]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type="checkbox"/> 해제 발송제외신청시 기타통지 서비스 전체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발송순서] ① 이메일 → ② SMS * 이메일로 우선 발송되며, 이메일이 없는 경우 SMS(발송방법이 SMS 포함된 경우)로 발송됩니다.
보유상품 변경 안내 (DB)		거래일 익영업일 통지	
기업부담금 입금 안내		입금일 익영업일 통지	
수수료 납부 예정 안내		수수료 납부일 1개월전 통지	
수수료납부 결과 안내		수수료 납부완료일의 익영업일 통지	
수수료미납 안내		수수료 미납발생일 익영업일 통지	
급여신청 등록 내역 안내		지급신청등록 익영업일 통지	
급여신청 결과 안내		지급완료후 익영업일 통지	

[제출서류]
1. 퇴직연금규약 및 규약 수리통보서(기업형IRP 제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기준 3개월이내) *개인사업자 생략
4. 대표자 또는 대리인 실명증명사본
5. 가입자명부(DB제도이면서 근로자300인이상인 사업장은 최근 3년간 '퇴직자명부' 추가 제출) ※ 기업부담금 자동이체 선택 시 '자동이체부담금 명부' 별도 제출
6. 상시근로자 10미만 확인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 기업형IRP



■ 상품 가입 고객 확인서

■ 예금 등 약관과 상품설명서의 수령 및 설명에 대한 이해와 투자 확인

- 본인은 원리금보장상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원리금보장상품에 투자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 의사임을 확인합니다.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수령함 수령거절함]
-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확인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설명되고 이해하였습니다.

■ 원리금보장상품 운용지시에 대한 고객 확인

- 원리금보장상품(정기예금, GIC)의 경우, 만기예정일(만기예정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의 2영업일전까지 손님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운용됩니다.
 -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동 재예치
 - 만기일(또는 해당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익영업일)에 당초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가산한 금액을 재예치합니다. 재예치기간은 당초 계약과 동일한 기간으로 하며, 재예치 이율은 재예치일 현재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시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동 재예치가 불가능한 경우(법규에 정한 금융기관간 상품교환 한도 초과, 자사상품 운용불가 등)에는 중도해지 수수료가 없고, 수시 현금화가 가능하지만 금리가 낮은 대기자금으로 운용됩니다.
 - 원리금 보장상품(정기예금, GIC)의 (재)예치가 불가능한 경우(법규에 정한 금융기관간 상품교환 한도초과, 자사상품 운용불가 등)에는 하나은행이 정한 타행 정기예금으로 대체하여 자동 (재)예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동의 미동의]
 - 은행에서는 원리금보장상품에 가입하신 손님께 만기 도래 15일전까지 LMS(장문문자메세지) 또는 E-Mail을 통하여 만기예고를 안내드리고 있사오니 하단의 안내 수신 허용 여부 및 수신방법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수신허용(E-mail) 안내수신 허용(LMS) 안내수신 거부]

■ 퇴직연금 구축행위 (대상 :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대표자, 신용등급(CB) 7등급이하 개인)

- 퇴직연금 신규(계약이전 포함)후 1개월이내 여신실행(신규, 대환, 재약정, 기한연장*)이 제한되며, 여신실행 1개월이내 퇴직연금 가입이 제한 됩니다.
 - 기한연장은 기한의 만기전(연장승인일) 퇴직연금 선가입은 구축행위에서 제외합니다.
 -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퇴직연금 신규시(DB, DC 가입자는 제외) 1개월이내 중소기업 여신실행이 제한됩니다.
 - 퇴직연금 구축행위외 다른 구축행위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리금비보장상품 운용지시에 대한 확인

- 원리금비보장상품(수익증권 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성향분석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절차에 따라 가입합니다.
- 실적배당형 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실적배당형 상품(수익증권) 매매시 개별 투자설명서상 기준가 적용시간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의 기준가 적용시간은 익영업일로顺延되어 적용됩니다. (투자설명서 기준가 적용일자 + 1영업일)
- 퇴직연금 감독규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투자 비중이 총 적립금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의 예금자보호 확인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확정급여형, 개인형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근로자(가입자) 개인부담금 입금 시 유의사항 확인

-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신축, 보영, 집합투자증권) + 퇴직연금(DC, IRP))의 가입자는 모든 금융기관을 통합하여 연간 18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의 계약금액 / 한도 / 중복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타행 금융정보 조회를 의뢰/동의 합니다.
- 다른 은행에서 이체하여 입금하는 경우 사전에 영업점을 통하여 입금예정 등록이 필요합니다.

■ 수수료에 관한 사항 확인

- 퇴직연금 계약서(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및 자산관리계약 부속협정서)에 의거 매년 계약당일(최초 부담금 입금일자) 기준으로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 납부하여야 합니다.
 - * 확정급여형(DB), 개인형IRP : 적립금 차감
 - * 확정급여형(DC), 기업형IRP : 별도납부(단, 가입자의 개인부담금은 적립금에서 차감)

■ 일시 지급(해지)시 과세 및 유의사항 확인

-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과세, 세액공제 받은 개인(본인)부담금 및 총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16.5%) 과세됩니다.
- 개인형IRP계좌 해지시 납입한 용도(퇴직금 또는 개인부담금)를 구분하여 일부만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단, 연금수령 신청과 동시에 1회에 한하여 적립금의 일부를 분할하여 인출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은 지급신청과 동시에 자금수령이 불가하며 운용중인 모든 상품(원리금보장, 원리금비보장)의 매도가 완료되어야 지급가능합니다. 손님의 운용상품별, 지급신청 시간대별로 실시간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상이하므로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장 미발행 신규 신청 및 확인

- 통장 발행 없이 신규 신청하며, 통장미발행 계좌의 해지(제신고)시 별도의 통장없이 예금거래신청서 상에 날인(기재)된 청구서 등에 의해 거래함에 동의합니다. 통장 발급을 원하실 경우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셔서 발행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형IRP 가입자격 확인

- 본인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대상*임을 확인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2조1항1호 참조)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과 퇴직연금수수료자출금서비스약관 및 유의사항, 퇴직연금 기업부담금자동이체약관 및 유의사항, 부담금 및 수수료 연동 납부 안내, 상품 가입 고객 확인서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계약서 및 약관, 확인서 사본, 신청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기에 하나은행과 퇴직연금 거래를 신청합니다.

기업명

(인/서명)

